

「평창군 지방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10월 2일, 평창군수 제출
- 회부일자: 2024년 10월 14일 회부
- 상정일자: 제29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024년 10월 14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행정담당관)

가.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위탁교육 훈련비 반납 기준을 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교육훈련 중 또는 교육훈련을 마친 의무위반 공무원에 대한 교육 훈련비 반납액 산정 기준 규정(안 제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영옥)

※ 검토보고서 전문 [붙임 1]

4.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 요지: 「없음」

6. 심사 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사항: 「없음」

붙임 1. 평창군 지방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2. 평창군 지방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 1부.

[붙임 1]

「평창군 지방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조례안 개요

- 제 안 자 : 평창군수
- 제안일자 : 2024. 10. 2.
- 회부일자 : 2024. 10. 14.
- 상정일자 : 2024. 10. 14.

2.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위탁교육 훈련비 반납 기준을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교육훈련 중 또는 교육훈련을 마친 의무위반 공무원에 대한 교육 훈련비 반납액 산정 기준 규정(안 제2조)

4. 검토의견

가. 관련 근거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지사체장과 지방의회 의장은 위탁교육 훈련 공무원이 귀책사유를 발생시키는 경우 반납액 산정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련비를 반납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나. 입법의 취지

-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공무원 위탁교육 훈련비 반납 기준에 관하여 정하고자 하는 것임.

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 안 제2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에서 위탁교육 훈련 공무원이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훈련비를 반납하게 하고 훈련비 반납액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별표 2의 산정기준표를 적용하도록 함.

5. 종합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공무원 위탁교육 의무 등의 위반 시 교육훈련비 반납을 규정함으로써 교육비 지원의 정당성 및 교육의 목적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수권 범위 내에서 내용을 규정하여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붙임 관계 법령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 의장은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반납액 산정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무원의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본인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해야 한다.

1. 훈련 중 면직된 경우(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면직된 경우는 제외)
2. 제32조에 따른 의무나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중도에 복귀된 경우 또는 특별한 사유 없이 교육훈련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교육훈련에서 탈락한 경우
3. 제33조에 따라 복귀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날까지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복귀 후에 교육훈련 중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면직된 경우
4. 제34조제1항에 따른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별표 2]

반납액의 산정기준표(제35조 관련)

| 구분 | 기준 | 반납액 |
|--------------------|------|--|
| 1. 제35조제1호·제3호 해당자 | 소요경비 | 전액 |
| 2. 제35조제2호 해당자 | 소요경비 | $\times \frac{1}{2}$ |
| 3. 제35조제4호 해당자 | 소요경비 | $\times \frac{\text{의무복무월수} - \text{근무월수}}{\text{의무복무월수}}$ |

비고

- 가. 의무복무월수 및 근무월수의 계산에서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한다.
- 나. 국외훈련을 위하여 받은 외화표시 소요경비는 반납고지서 발급일의 현찰매도환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 다. 제2호 해당자가 다시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추가반납액의 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text{추가반납액} = \text{소요경비} \times \frac{1}{2} \times \frac{\text{의무복무월수} - \text{근무월수}}{\text{의무복무월수}}$$

[붙임 2]

평창군 지방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

| | |
|----------|-----|
| 의안 번호 | 341 |
|----------|-----|

제출년월일 : 2024.10. 2.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평창군 지방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상위 법령(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위탁교육훈련비 반납 기준을 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교육훈련 중 또는 교육훈련을 마친 의무위반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비 반납액 산정 기준을 규정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4. 8. 2. ~ 2024. 8. 2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평창군 공고 제2024-1129호, 행정담당관-4658(2024. 8. 25.)호
-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기획예산과-2089(2024. 8. 2.)호]
- 3) 부패영향평가 : 부패유발요인 없음 [기획예산과-2089(2024. 8. 2.)호]
-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없음 [가족복지과-4461(2024. 8. 1.)호]
- 5) 법제심사 : 적정 [기획예산과-4070(2024. 9. 6.)호]
- 6)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원안의결[기획예산과-4934(2024. 9. 26.)호]

평창군 지방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① 평창군수는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납하게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반납액의 산정기준은 영 별표2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취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시행 2022. 1. 13.]

제35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반납액 산정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무원의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본인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1. 11. 30.>

1. 훈련 중 면직된 경우(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면직된 경우는 제외한다)
2. 제32조에 따른 의무나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중도에 복귀된 경우 또는 특별한 사유 없이 교육훈련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교육훈련에서 탈락한 경우
3. 제33조에 따라 복귀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날까지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복귀 후에 교육훈련 중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면직된 경우
4. 제34조제1항에 따른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별표 2]

반납액의 산정기준표(제35조 관련)

| 구분 | 기준 | 반납액 |
|--------------------|--|-----|
| 1. 제35조제1호·제3호 해당자 | 소요경비 | 전액 |
| 2. 제35조제2호 해당자 | 소요경비 × $\frac{1}{2}$ | |
| 3. 제35조제4호 해당자 | 소요경비 × $\frac{\text{의무복무월수} - \text{근무월수}}{\text{의무복무월수}}$ | |

비고

- 가. 의무복무월수 및 근무월수의 계산에서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한다.
- 나. 국외훈련을 위하여 받은 외화표시 소요경비는 반납고지서 발급일의 현찰매도환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 다. 제2호 해당자가 다시 제3호에 해당한 경우 그 추가반납액의 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text{추가반납액} = \text{소요경비} \times \frac{1}{2} \times \frac{\text{의무복무월수} - \text{근무월수}}{\text{의무복무월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조례 제정으로 인한 비용 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조례 제정으로 인한 비용 발생 요인 없음

4. 작성자

| | |
|-----|------------------|
| 작성자 | 평창군 행정담당관 권혁수 |
| 연락처 | (033) 330 - 2210 |